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S&S's 뉴스레터 – 2016 년 07 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S&S 회계법인의 2016년 07월 뉴스레터입니다. 해당 뉴스레터를 통하여 귀사 경영에 소중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뉴스레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공인회계사: 이삼한 회계사

M/P: 091-377-2279

E-mail: samuel230@hanmail.net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Head office:

8th Floor, Yoco Building

41 Nguyen Thi Minh Khai St, Distict 1, HCMC, Vietnam

Tel: 84 (8) 39 104 996

Fax: 84 (8) 39 104 998

Hanoi:

Room 1506, Block 24T2, Trung Hoa, Nhan Chinh, Cau Giay, Hanoi, Vietnam

Tel: 84 (4) 62 512 199

Fax: 84 (4) 62 512 201

Web: <http://www.ssaudit.com>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목록 ●●●●

1. 2016년 07월 25일, 부가세 환급
에 관한 공문NO. 10315/BTC-
TCT

- 페이지 3

2. 비현금 결제에 관한 시행령
NO.80/2016/ND-CP

- 페이지 3 - 4

3. 2016년 07월 05일, 개인소득세
환급 지침에 관한 공문
NO.44646/CT-HTr

- 페이지 4

4. 세무등록 지침에 관한 시행
규칙 NO.95/2016/TT-BTC

- 페이지 5

5. 부양가족 공제 지침에 관한
공문 NO.43272/CT-HTr

- 페이지 5

6. 2016년 06월 29일, 부가세 환
급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NO.99/2016/TT-BTC

- 페이지 6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2016년 07월 25일, 부가세 환급에 관한 공문NO. 10315/BTC-TCT

변경된 조세 법령 106/2016/QH13, 제1조, 제3항에 의거, 국내 매매 재화의 매입부가세는 세금 환급이 불가능하고, 공제만 가능하며 공제된 부가세를 이월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조항은 2016년 07월 01일부터 유효합니다. 결과적으로 규정에 의거, 2016년 07월 또는 2016년 3분기부터 본 규정의 매입부가세 환급 제한 규정의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번호 106/2016/QH13의 제 3조, 3항에 의거한 지연이자 0.05%/일 에서 0.03%/일로 감소되었으며 본 법령 또한 2016년 07월 0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더불어, 2016년 07월 01일 이전에 발생한 미납세금이지만 위의 날짜까지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2016년 07월 01일 이후에는 지연 이자 0.03%/일 이 적용됩니다.

비현금 결제에 관한 시행령 NO.80/2016/ND-CP

위 시행령은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한 다수의 중간 결제 서비스 및 비현금 결제 수단 등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해당 시행규칙에 의거, 상업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은 지급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오직 전자결제 제공만이 허용됩니다.

비현금 지급으로 허용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표, 지급 명령, 지불 승인, 추심 명령, 수금 위임장,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명시한 은행 카드 및 다른 결제 수단.....

상기 이외의 결제수단의 사용은 불법 결제로 여겨집니다.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더불어, 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5세부터 18세 이하의 개인은 개인자산이 없을 지라도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입금계좌)

또한 한정치산자, 법적무능력자 및 정신이상자는 법적 대표자 혹은 그들의 대리인을 통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본 시행령은 2016년 07월 01부로 발효됩니다.

2016년 07월 05일, 개인소득세 환급 지침에 관한 공문 NO.44646/CT-HTr

시행규칙 번호 92/2015/TT-BTC 21조 2항 a. 5절에 의거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전문가들의 경우, 노동계약서가 만료되고 본국으로 돌아갈 시, 반드시 개인소득세 환급을 시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전문가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개인이 직접 개인소득세 신고업무를 하거나 혹은 민법에 따른 개인 및 단체에게 본국으로 돌아가기 45일 내, 본 업무를 위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세금이 과다 지불되어 외국인 전문가가 세금 환급을 원할 시, 그들은 타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세금 확정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와 별도로, 만약 외국인 전문가가 베트남에 처음 방문하며 그 방문 기간이 183일을 초과 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거주자로 간주 됩니다.

시행규칙 번호 92/2015/TT-BTC 제 21조항에 의거 외국인 전문가들은 회계처리를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 타인에게 위임을 통해 개인소득세 정산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 하였을 시, 타인에게 위임을 하여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번호 111/2013/TT-BTC 28조에 의거)

특히, 외국인 전문가들은 첫 양력에 183일 이하 거주 하나 연속 12개월 동안의 거주기간이 베트남 입국일부터 183일 이상일 경우 개인소득세 청산 시점은 시행규칙 번호 92/2015/TT-BTC 제 21조, a. 5절에 따라 이행됩니다.

시행규칙 번호 156/2013/TT-BTC의 제 10조 1조에 의거, 베트남 내의 세무신고는 베트남동으로 합니다.

본 규정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가 개인소득세 환급을 신청 할 시, 그들의 개인 베트남동 계좌를 통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세무등록 지침에 관한 시행규칙

NO.95/2016/TT-BTC

2016년 06월 28일, 재무부의 시행규칙 번호 95/2016/TT-BTC의 세무 등록 지침에 의거.

이전 지침과 유사하게, 모든 세금 납부자들은(개인, 기업, 계약자 및 정부 기관.....)10~13자리의 숫자에 해당하는 동일한 세무코드 구조(MST)를 가지며 기업의 코드는 사업자등록증의 세무코드와 동일합니다. (조항4)

하지만 본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세금의무 발생 대상을 제외하고,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부양자 또한 세무코드를 발급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임금 및 급여 소득이 있는 세금 납세자의 부양가족에게 세무코드를 발급하는 것은 가족공제의 기초가 됩니다.

이후 부양가족의 세금 의무가 발생할 경우, 발급 받은 세무코드는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기업유형 변경 및 기업 양도, 기업승계 및 증여의 경우 세무코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본 시행규칙에 따라, 휴업 신청 또는 조기 영업재개 신청 통보 기한은 5일에서 15일로 변경됩니다. (제 21조)

본 시행규칙은 2012년 05월 22일 발효된 시행규칙 80/2012/TT-BTC을 대체하며 2016년 08월 12일부터 발효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지침에 관한 공문

NO.43272/CT-HTr

시행규칙111/2013/TT-BTC에 의거, 개인은 부양가족의 부양의무 발생 월로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위에 따라, 만약 회사의 직원이 그들의 부양가족수가 증가될 시 부양가족공제는 부양 책임이 발생하는 월로부터 계산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 수가 증가 될 시 이에 대한 증빙 서류는 증가 신청서 제출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8-39104996-39104997
Fax: 0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

2016년 06월 29일, 부가세 환급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NO.99/2016/TT-BTC

부가세 환급에 관한 본 시행규칙의 지침이 세무기
관으로부터 제공되었으며, 이는 문서 재분류, 부가
세 환급 금액 확정 및 부가세 환급 결정문 발행 등
을 포함 합니다.

아래에 따른 7가지의 경우 세무서의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후,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

1. 국제 조항을 따를 경우(해외 물류 환불 신청을
제외한)
2. 최초 VAT 환급 신청의 경우
3. 탈세자에 대한 처벌로부터 2년 이내 부가세 환
급을 신청한 경우
4. 밀수 및 무역사기에 대한 처벌로부터 2년 이내
에 수출 품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신청 한 경
우
5. 부가세 환급을 신청한 주체가 합병, 분할, 청산,
파산, 소유권의 주체 변경, 영업 중지, 양도, 판
매 및 임대차 기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6. 부가세 환급을 신청한 주체가 높은 세무 위험
도를 가진 경우

7. 선 부가세 환급 후, 검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
지만 제 시간에 설명서 및 보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요청 날짜로부터 10 일 이내)

본 시행규칙은 시행 규칙 번호 94/2010/TT-BTC,
결정서 번호 2404/QĐ-BTC 및 시행규칙 번호
150/2013/TT-BTC를 대체하며 2016년 08월 13일 부
터 발효됩니다.

해당 뉴스레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대표 공인회계사: 이삼한 회계사
M/P: 091-377-2279
E-mail: samuel230@hanmail.net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Ho Chi Minh Head Office:
8th Floor, Yoco Building
41 Nguyen Thi Minh Khai St, Distict 1, HCMC, Viet
nam
Tel: 84 (8) 39 104 996
Fax: 84 (8) 39 104 998

Hanoi Office:
Room 1506, Block 24T2, Trung Hoa, Nhan Chinh,
Cau Giay, Hanoi, Vietnam
Tel: 84 (4) 62 512 199
Fax: 84 (4) 62 512 201